

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

(제23조제3항 및 제35조 관련)

구 분	장 부 명
1. 배합사료 제조업자	가. 원료수불대장(동물용의약품 수불대장 포함) 나.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(동물용의약품 첨가사료와 무첨가사료 구분) 다. 자가품질검사대장(원료 및 제품의 성분 분석결과) 라. 등록제품배합율표(배합율표·제품 성분표·원료성분표 등)
2.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제조업자	가. 원료수불대장 나.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다. 자가품질검사대장(원료 및 제품의 성분분석결과)
3. 수입업자	가. 제품수불대장 나. 제품판매대장 다. 자가품질검사대장(제품성분분석결과)
4. 판매업자	제품수불 및 판매대장
5. 사료시험검사기관	가. 검정대장 나. 사료검정증명서
6. 사료검정기관	가. 검정대장 나. 사료검정기록서